

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(제54조 관련)

1. 확인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.
2.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, 거짓으로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